

의안번호	2202464
의 퇴 인	박지혜 의원
회 답 일	2024. 8. 6.
추 계 번호	24B147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위탁하고 해당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487억 1,400만원(연평균 97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인건비	1,519	1,548	1,578	1,608	1,638	7,891	1,578
기본경비	73	75	76	77	79	380	76
자산취득비	97	—	—	—	—	97	19
평가사업비	9,509	9,204	5,468	7,063	9,102	40,346	8,069
합계	11,198	10,827	7,122	8,748	10,819	48,714	9,742

주: 1. 개정안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주기적 안전성평가 운영방식 및 평가사업비 단가 변동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u>매 10년마다 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함(제1항)</u> ※ 현행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최신기술기준(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안 제111조제1항제14호¹⁾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같은 조

1) 안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²⁾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액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추계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기술적 사항으로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필요
- 현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평가인력 규모를 준용하여, 해당 인원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원을 증원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평가사업비를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³⁾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인건비) 현행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총 14명의 평가인력을 통해 실시 중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직원 1인당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면,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원 14명을 증원하기 위한 인건비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78억 9,100만원(연평균 15억 7,800만원)으로 추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2024년도 예산 기준 1인당 인건비 1억 647만원

14.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2) 「원자력안전법」 제111조(권한의 위탁)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4년 3월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2	2.1	2.1	2.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	1.9	1.9	1.9	1.9

- 개정안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공공분야의 업무에 해당하고, 수탁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 상승률은 공무원의 임금 상승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표 2]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4명 증원 관련 인건비	1,519	1,548	1,578	1,608	1,638	7,891	1,5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2024년도 예산 기준 4.82%)을 적용하면, 개정안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3억 8,000만원(연평균 7,600만원)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4명 증원 관련 기본경비	73	75	76	77	79	380	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된 5,892,484원(2020년 공공기관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개정안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9,700만원(연평균 1,900만원)으로 추계
 - 자산취득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 첫해인 2025년에만 발생

[표 4] 개정안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4명 증원 관련 자산취득비	97	-	-	-	-	97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평가사업비) 추계기간 동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대상 시설 수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평가사업비 단가를 적용한 금액에서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에 편성된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비용을 차감하면, 개정안에 따른 평가사업비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403억 4,600만원(연평균 80억 6,900만원)으로 추계
 - (대상 시설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예상 일정 및 1개 시설당 평가 기간(3.5년⁴⁾)을 참고하면, 추계기간 중 주기적 안전성평가 대상 시설의 수는 2025년 9호기, 2029년 8호기 등임

[표 5] 주기적 안전성평가 예상 일정: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고리1호기					
신고리1·2호기					
새울1·2호기					
한빛3·4호기					
한빛5·6호기					
신월성1·2호기					
한울3·4호기					
한울5·6호기					
신한울1·2호기					

주: 추계기간 동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일정에서 제외함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표 6] 연도별 주기적 안전성평가 대상 시설 수: 2025~2029년

(단위: 개)

	2025	2026	2027	2028	2029
복수 시설	8	8	6	6	8
단수 시설	1	1	0.5	-	-

주: 고리1호기는 단수 시설이며, 나머지 시설은 복수 시설에 해당함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평가사업비 단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착수한 새울1·2호기 및 월성1호기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금액을 참고하면, 1호기당 비용단가는 복수 시설 11억 500만원/년⁵⁾, 단수 시설 6억 6,900만원/년⁶⁾이고, 추계기간 중 평가사업비 단가가 소

4)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착수한 새울1·2호기의 평가 기간인 3년 6개월을 적용함

5) 새울1·2호기 기준 주기적 안전성평가 비용(77.4억원)을 적용하면, 77.4억원÷2호기(복수시설)÷3.5년=11.05억원

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현행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 예산 차감) 개정안 시행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을 통해 직접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예산은 불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금액을 차감함
- 2024년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비용⁷⁾은 20억 5,600만원(8건 기준)으로 건당 2억 5,700만원이므로, 추계 기간 중 주기적 안전성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가 종료되는 해에 해당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차감함

[표 7] 개정안에 따른 평가사업비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대상 시설수(복수시설), A	8	8	6	6	8	36	—
대상 시설수(단수시설), B	1	1	0.5	—	—	2.5	—
평가 단가(복수시설), a	1,105	1,129	1,153	1,177	1,202	—	—
평가 단가(단수시설), b	669	684	698	713	728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기적 안전성 평가사업비 (A×a)+(B×b)=C	9,509	9,718	7,267	7,063	9,616	43,173	8,635
현행법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 비용, D	—	514	1,799	—	514	2,827	505
추가재정소요, C-D	9,509	9,204	5,468	7,063	9,102	40,346	8,0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위탁하고 해당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487억 1,400만원(연평균 97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6) 월성1호기 기준 주기적 안전성평가 비용(23.4억)을 적용하면, 23.4억원÷3.5년=6.69억원

7)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 세부사업(1700-1702)의 내역사업(가동원전안전규제)임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인건비	1,519	1,548	1,578	1,608	1,638	7,891	1,578
기본경비	73	75	76	77	79	380	76
자산취득비	97	—	—	—	—	97	19
평가사업비	9,509	9,204	5,468	7,063	9,102	40,346	8,069
합계	11,198	10,827	7,122	8,748	10,819	48,714	9,742

주: 1. 개정안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주기적 안전성평가 운영방식 및 평가사업비 단가 변동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주기적 안전성평가 운영방식 및 평가사업비 단가 변동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